

2023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시연행사 운영·참가 지원〉 공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제주지역 문화창작품의 인지도 향상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2023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애니메이션·음악 분야의 지역 콘텐츠확산을 위한 유통 판로 개척
- 콘텐츠별 맞춤형 홍보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제주도내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명: 2023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명: 시연행사 운영·참가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2023. 10. 31.
- 공고기간: 2023. 2. 3.~2. 17.
- 지원분야: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분야
- 사업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호 중 음악, 애니메이션관련 산업에 해당하며, 공고일 기준 제주도내 소재 기업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사업내용

구분	시연행사 운영 지원		시연행사 참가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소재 관련 기업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조 해당)			
지원 규모	2개 내외 업체 또는 개인창작자			
지원 내용 (선택)	● 국내 시연행사 운영		● 국내 시연행사 참가	
	장소 임차료	행사개최를 위한 장소 임차료	참가비용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및 비즈매칭 비용
	장비 임차료	행사개최를 위한 장비(악기·음향·조명 등) 임차료	부스임차료	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
	행사시설비	행사개최를 위한 구조물 등 설치·구축경비 ※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	부스디자인비	부스디자인 제반비용 ※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
	운송료	소포비 등 물품 운반비용	장치임차료	전기,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
	홍보물제작비	홍보영상,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	운송료	소포비 등 물품 운반비용
	광고선전비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홍보물제작비	홍보영상,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
(최대 10백만원 상당)		(최대 10백만원 상당)		
※ 용역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 / ※ 지원사항 외 참가기업 자부담				
지원 조건	국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창작품(애니메이션, 음악)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 및 개인 창작자			
	※ 국내·외 매출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시 우대			
지원 제외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사업계획 제출 시 기 발굴 문화창작품(애니메이션, 음악)의 관련 실적 및 증빙 첨부			
기타	● 지원 후 결과보고서/정산서 및 성과활용계획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향후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그 근거가 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가 아닌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수출계약서: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되어야 함			
	●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선정 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행기업(개인)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구성, 규모,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운영, 참가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능)

3. 평가방법

○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기준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선정기준 -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가점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창작품의 우수성	○ 창작품의 우수성, 잠재성 ○ 창작품 활용현황 등 ○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매출 등 성과	25점
사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계획의 구체성, 내용의 타당성, 추진일정의 명확성, 현실성 등 ○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 예산대비 결과물(활동)의 적정성(양적, 질적)	25점
국내외 마케팅	○ 타겟층이 명확하며, 구체적 전략 제시 ○ 국내외 시장 진출 역량 보유 현황	25점
결과물 활용계획	○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목표시장에서의 예상 성과를 제시	25점
합계		100점
우대가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내 입주기업	2점
	○ 진흥원 네트워크 풀 등록 창작자 및 기업	1점

4.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2023. 2. 13.(월)~2. 17.(금), 17:00까지
- 신청서 제출기간: 2023. 2. 20.(월)~2. 22.(수), 15:00까지
- 접수방법: ①담당자 메일을 통한 접수 후, ②신청서 출력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붙임자료 참조)
 - 우편제출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출기업(창작자)에 있음
- 접수처: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가동 1층 사무실(서귀포시 동홍로 41)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하도연 주임연구원	064)766-0705	hado@ofjeju.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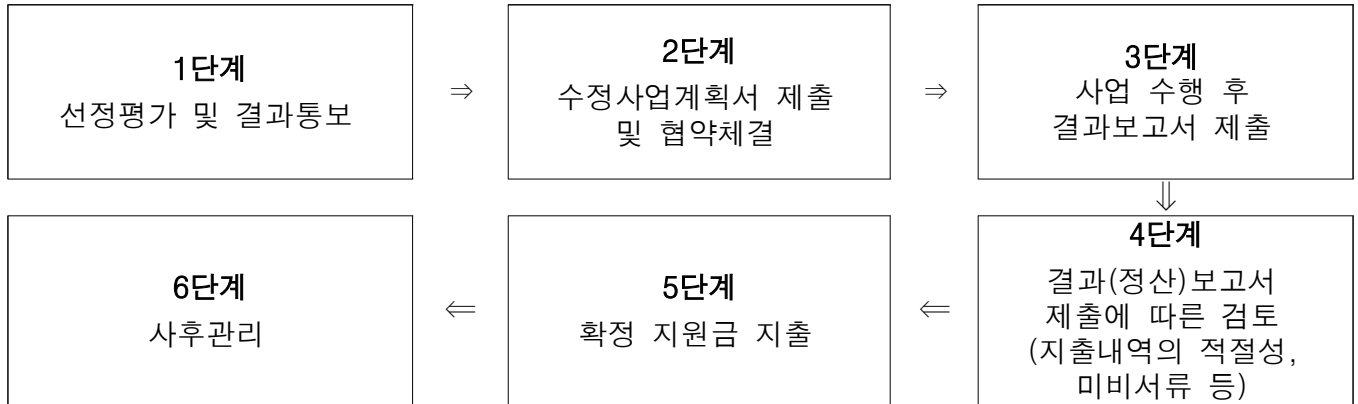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u>원본 1부</u> <u>사본 5부</u>	○ [서식] 다운로드 후 붙임1, 붙임2 작성
2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 [서식] 다운로드 후 붙임3 작성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서식] 다운로드 후 붙임4 작성
4	평가위원 추천표	1부	○ [서식] 다운로드 후 붙임5 작성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 각 1부 제출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21~2022년도) ※ 개인 사업자, 단체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종합소득세신고서 1부
8	기타 추가 자료	각 1부	○ 주요 계약서(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납품서 등) ○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 문화창작품 참고 자료(이미지, 파일, 인쇄물 등) ○ 기타 창작자/기업의 보유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인증서 등)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창작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신청 기업(창작자) 부담

5. 정산 및 지원절차

○ 사업수행절차



- ※ 협약체결 이후 집행된 지출에 한해서 인정
- ※ 최종지원금은 원 단위 이하 절사 후 지급

○ 정산내역 증빙자료 : 세부내용은 [붙임6] 참조

카드지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계좌이체 확인증 외 다음을 첨부 - 법인 또는 업체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개인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신고 必), 신분증, 통장사본

6. 기타사항

○ 지원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를 명기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개인)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2023년 2월 3일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